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8

발의연월일: 2021. 1. 5.

발 의 자:김정재·태영호·장제원

양금희・金炳旭・배준영

서일준 • 이종배 • 송언석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정한 상황의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판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의무나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의무나 업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낮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과태료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 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3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u>1천만원</u>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